

한림대학교 산학현장실습

-2020년 하계-



학생에게는 실무역량 강화와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관에는 우수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산학현장실습 참여 가능 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
- **제외대상**: 단순 노무직종(텔레마케팅, 경비, 건물관리, 홀서빙, 재택근무, 단순 제조 및 생산 등), 영업 및 판매 전담업무 등

한림대학교 현장실습생 지원 사항

- 참여대상: 한림대학교 3 ~ 4학년 재학생
- 현장실습 이수 시 지원금(기관, 대학)과 학점·계절수업료(대학) 지원

구 분	기관 → 학생		대학 → 학생		
	지원금(교육부 관련 기준 제7조)	대학 → 학생	지원금	학점	
국내 단기	4주	수업요건을 갖춘 경우: 4주 기준 300,000원 이상 권장	500,000원	3학점	
	8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	1,000,000원 (4주 기준 500,000원)	3 or 6학점	
해외 단기	4주	숙식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은 파견 기관 내규에 따름	*1,500,000원	**1,300,000원	3학점
	8주		*2,000,000원	**1,800,000원	3 or 6학점

※해외 국가별 지원금 : *가 등급-미주·유럽, **나 등급-기타 국가

- 수업요건을 갖춘 실습: 전공과 관련된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제공
- 실질적 근로의 실습: 실습과정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 실질적 근로 대상 여부는 참가 승인 전 기관이 작성한 참여신청서를 토대로 대학에서 검토 및 기관별 안내함

한림대학교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기준 (교육부 지침 및 대학 지침에 따른 기준 준수)

주요사항	비고
근무일수(현장실습 이수기준): 4주 20일, 8주 40일	· 8주 근무일수(40일)에는 월차휴가 1일이 포함됨
8주 참여자는 4주 만근 후 월차휴가 1일 활용 가능	· 4주 참여자는 휴가 없음
법정공휴일 외 기관의 자체 휴무 발생 시 대학에 사전 안내 (부족한 근무일수는 실습기간을 연장하여 준수해야 함)	근무일수 미달 시 실습생 학점 및 지원금 지급 불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습생과 협의 하에 근무시작일 조정 가능	대학과 사전논의 후 조정
기관의 주차별 운영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홈페이지 참여신청 시 자세한 업무내용 기재

※한림대학교 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기준에 관한 FAQ를 확인하세요! (FAQ 페이지 참조)

2020년 하계 현장실습프로그램 시행 절차 및 일정

순번	구분	내용	주체	일정
1	실습기관 신청	한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참여신청 (★자세한 업무내용 기재 요망)	기관	2020.4.6.(월) ~ 4.24.(금)
	신청서 확인 및 승인	기관 신청서의 업무내용 및 신청사항 확인 후 승인처리	대학	
2	참여학생 모집	기관 신청사항 확인 후 희망기관에 학생 지원	학생	2020.4.27.(월) ~ 5.8.(금)
3	서류심사 및 면접	신청사항에 따라 기관, 대학 (센터) 면접 선발 (★기관 면접선발 권장)	기관	기관 : 2020.5.11.(월) ~ 5.20.(수)
			대학	대학 : 2020.5.11.(월) ~ 5.15.(금)
4	추가 모집 및 선발	미매칭 기관 학생 추가모집 및 선발 (★모집/선발 동시 진행)	기관 대학 학생	2020.5.25.(월) ~ 6.5.(금)
5	사전직무 교육	현장실습 설명회 및 비즈니스 매너 등 사전직무교육 실시 (실습 선발자 전원 대상)	대학	2020.6.8.(월) ~ 6.9.(화) 양일간 진행
		비즈니스 엑셀 등 업무관련 사전직무교육 실시(희망자 대상)	대학	2020.6.1.(월) ~ 6.12.(금) 기간 내 3회 진행
6	현장실습 시행	기관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 시행 (*하계 현장실습 시행 기간은 2020.6.29.(월) ~ 8.28.(금) 내에서 조정 가능하나, 학교와 사전논의 필요)	기관	4주1차: 2020.6.29.(월) ~ 7.24.(금)
			기관	4주2차: 2020.7.27.(월) ~ 8.21.(금)
			기관	8주 : 2020.6.29.(월) ~ 8.21.(금) (4주 만근 후 월차휴가 1일)
7	실습기관 방문	지도교수 및 담당직원 기관 방문	대학	실습시작 2주 후부터
8	실습 종료	현장실습 종료에 따른 출석부 및 평가서 등록	기관	종료 후 3일 내
		이수자에 대한 지원 사항(지원금 등) 지급	기관 대학	기관 : 4주마다 지급(지원금) 대학 : 종료 후 일괄 지급

한림대학교 현장실습 신청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상단 메뉴 : 현장실습관리 - 기관참가신청)
- 홈페이지 : intern.hallym.ac.kr

문의

E-mail : intern@hallym.ac.kr

TEL : 033-248-1084~1087 FAX : 033-252-1032



☛ 대학생 산학현장실습 운영 관련 주요사항

① 교육부 지침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한 한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침」의 기준 준수
- 1일 8시간 이내, 1주간 40시간 이내 근무
- 추가, 연장 근무는 관련 법령 범위 준수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원금 지급 시 가능
- 산학현장실습 이수를 위해서는 정해진 근무일수를 준수해야 함
- 기업의 **주차별 운영계획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참가신청서, 연수확약서 등 서류 일체)
(관련 법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6조, 제7조, 제15조)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주요내용 (2017.3.개정)

제6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제1항 현장실습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현장실습은 제1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현장실습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 제1항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 제5조 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현장실습으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실습기관 관리 및 점검)

제1항 실습기관은 실습학기제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내용
5. 현장실습 지원비 및 현장실습생 지원 사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에 따라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산재보험법 제 123조(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 주요내용 (2018.11.개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단,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 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 신고 의무: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 제3항, 4항 참고

- ① 현장실습 시작 시: 일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신고’와 동일 내용** 조치
- ② 현장실습 종료 시: 일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업주의 **‘고용관계 종료신고’와 동일 내용** 조치
단, 각 조치 기한은 현장실습이 시작 또는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임



산학현장실습 프로그램 **FAQ!**

Q 4주의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공휴일 1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현장실습 참여 학생이 4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A 불가합니다. 산학현장실습은 학생이 실제 실습을 시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이수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추가 근무를 시행해야하며, 법정공휴일 외 기관의 자체 휴무 발생 시에도 역시 휴무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추가 근무가 필요합니다. (산학현장실습 이수 기준 : 4주 - 20일, 8주 - 40일)

Q 8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1일 휴가를 요청하였습니다. 기관에서 학생에게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A 한림대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8주 현장실습생에게 5주 ~ 8주차(4주 만근 후)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합니다. (4주 실습생은 해당 없음) 따라서, 8주 현장실습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은 학생과 일자를 협의하여 학생에게 부여된 1일의 휴가를 활용해야 하며, 이는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8주 현장실습프로그램 이수 기준 계산식 : **실근무일수 39일 + 월차휴가 1일**)

Q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금액이 발생하는데, 기관에서 꼭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나요?

A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에 따라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방법을 확인하시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관련 Q&A"를 참조

Q 현장실습프로그램 신청 시 기재한 현장실습생에 대한 기관지원금을 기관 사정상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원할 수 있나요?

A 산학현장실습 진행 시 학교-기관-학생은 3자 협약(연수확약서)를 통해 기관지원금의 지급액과 지원 방법을 확정하며, 이는 기관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시 작성된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및 연수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승인과 진행이 이루어지므로, 학교 및 학생과 협의되지 않은 기관의 지원금 지급 불이행과 축소 지원은 불가합니다.

Q 현장실습생 선발 후, 현장실습생을 교육하고 관리할 담당자가 퇴사하여 담당자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A 현장실습생 관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현장실습 진행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본교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실습학기제로 운영되며, 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습 진행 및 이수가 불가합니다.** 기관 내 현장실습생 담당자가 없는 경우는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습에 해당하므로 담당자가 공석이 된 경우 즉시 대학에 관련 사실을 전달해야 하며, 신규 담당자 지정 시에만 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 내 근무자 수가 현장실습생보다 적은 경우도 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위배되므로 참여 신청 시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업무 특성상 특정 기간에 한하여 의도치 않은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학생에게 정해진 현장실습 시간 외 추가 근무(야근 및 주말 근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현장실습생에 대한 추가 근무는 **실습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야간실습(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운영은 불가합니다.

현장실습생이 추가 근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근무 시행 시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및 연수확약서에 기재된 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근무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실습의 경우에도 실습생이 동의하지 않은 추가 근무는 시행할 수 없으며, 실습생이 동의한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림대학교 산학현장실습 참여학과(전공) 현황

단과대학	학과(전공)
인문대학	인문학부(국어국문학전공, 사학전공, 철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러시아학과
	글로벌융합인문학전공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정치행정학과
	광고홍보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금융재무학과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식품영양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언어청각학부(언어병리학전공, 청각학전공)
	체육학과
글로벌융합대학	글로벌학부(글로벌비즈니스전공, 정보법과학전공, 문화산업전공, 한국학전공)
	융합인재학부(의과학융합전공)
	시융합전공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디지털미디어콘텐츠전공
데이터과학융합스쿨	임상의학통계전공, 데이터테크전공, 디지털금융정보전공
나노융합스쿨	반도체전공, 디스플레이전공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터전공, 콘텐츠IT전공, 스마트IoT전공
미래융합스쿨	ICT융합전공, 디지털인문예술전공, 한류크리에이터공공외교융합전공, 융합관광경영전공, 의약신소재전공, 융합신소재공학전공, 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융합전공, 인터랙션디자인전공
산학협력특성화대학	헬스케어진단전공, 사회혁신경영전공, 건강돌봄디자인전공